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박주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2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. 13.

발의자 : 박주선, 강선영, 홍재희, 고찬양,
최세진, 이충현, 김희동, 전철규,
신찬호, 이종숙, 정장훈, 한상욱,
조기만, 최동철, 김현진, 김순옥,
김지수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상위법이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서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2. 1. 6.)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,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의 권한 변경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로 제명 변경
- 나.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용어 정비

- 다. 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대상 및 내용 추가(안 제6조)
- 라.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조항 신설(안 제9조)
- 마.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- 바. 환경교육과 관련한 경비지원 조항 신설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입법예고 : 2023. 1. 13.~1. 25.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환경교육진흥법」”을 “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환경교육진흥법」”을 “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교육장”을 “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“교육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학교환경교육 지원)”을 “(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,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9조,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 개발 및 보급
2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3.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·협력
4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
5.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6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경비지원 및 보조)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

2.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중전의 제10조)제1항 중 “진흥을”을 “활성화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진흥”을 “활성화”로, “표창 할”을 “표창할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환경교육진흥법</u>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학교환경교육“이란 「<u>환경교육진흥법</u>」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<u>교육장</u>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</p>	<p><u>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「<u>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</u>(이하“<u>교육장</u>”이라 한다) -----</p>

다.

제6조(학교환경교육 지원)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 설>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ㄱ.

제6조(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)

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

2. ~ 7. (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 구청

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)

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

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 개발 및 보급

2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
3.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·협력

4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

5.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
6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 (생략)

<신설>

제11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2조(경비지원 및 보조)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

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
2.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홍보 및 표창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·기관별·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.

제11조 (생 략)

제13조(홍보 및 표창) ① -----
----- 활성화를 -----

-----.

② ----- 활성화-----

----- 표창할 -----.

제14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□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 - 1의2.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 2.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 3.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4. 환경체험·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1.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
 2.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
 3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4조(사회환경교육의 실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3.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“지역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,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